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국가인재DB 인재추천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무원 제해보상 심사 의료영상물 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소방공무원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안정적인 민원·제안 관리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 1명을 일반직 정원(5급 1명)으로 조정하며, 범부처 적극행정 확산 추진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존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며,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체육프로그램 운영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 글로벌 역량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전문경력관 가군 1명)하며,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3.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1명(9급 1명) 및 소속기관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인사혁신처 기존 정원 8명(6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5명, 7급 2명, 8급 1명)하며, 소속기관 기존 정원 1명(8급 1명)의 직

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고,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사혁신기획과·심사임용과·개방교류과”를 “인사혁신기획과·적극행정과·심사임용과·개방교류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공직인사혁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적극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적극행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2.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개선
3.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적극행정 관련 교육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적극행정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6.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7.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8. 적극행정 전용 홈페이지의 기획·운영
9.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추진

10. 정부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

11.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 인사부문 자체평가 확인·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국가시책담당 우수 성과 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무

제12조제4항제3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중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표 3과 같으며”를 “별표 3과 같다. 다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와 같으며”로 한다.

제7장 “한시정원”을 신설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한시정원)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소청심사위원회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377”을 “384”로 하고, 일반직 계 “376”을 “38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를 “1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을 “25”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8”을 “70”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60”을 “6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7”

을 “18”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다음에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378”을 “384”로 하고, 일반직 계 “377”을 “38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를 “1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을 “25”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8”을 “75”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60”을 “58”로 하며, 행정 또는 전산주사보 “1”을 “2”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7”을 “19”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다음에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5”를 “4”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삭제하고, 운전서기 “1”을 “2”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비서) 1”을 삭제하고, 운전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3 중 제목의 “(제17조제1항 관련)”을 “(제17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총계 “157”을 “158”로 하며, 일반직 계 “156”을 “157”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외국어훈련 담당) “1”을 “2”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이러닝콘텐츠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체육교육 담당) 1”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외국어훈련 담당) 1”을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및 운전서기 1명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3월 3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별표1의2의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및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1명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3월 3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인사혁신국) ① (생략)	제9조(인사혁신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혁신국에 <u>인사혁신기획과 · 심사임용과 · 개방교류과</u> 및 균형인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u>인사혁신기획과 · 적극행정과 · 심사임용과 · 개방교류과</u> -----
③ 인사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인사혁신추진위원회</u> 운영 지원	2. <u>공직인사혁신위원회</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정부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 · 확산</u>	<삭 제>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9. <u>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 · 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u>	<삭 제>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1. <u>인사부문 자체평가 확인 ·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삭 제>
12. <u>국가시책담당 우수 성과 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무</u>	<삭 제>

13. ~ 19. (생략)

<신 설>

13. ~ 19. (생략)

④ 적극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적극행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 · 개정
2.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 · 개선
3.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적극행정 관련 교육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적극행정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 확산
6.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7.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8. 적극행정 전용 홈페이지의 기획 · 운영
9.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 · 추진
10. 정부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 · 확산
11.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 · 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 인사부문 자체평가 확인 ·

	<u>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13. 국가시책담당 우수 성과 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무</u>
④ 심사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⑤ 개방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⑥ 균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2조(기획부) ① ~ ③ (생 략)	제12조(기획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3. ----- <u>접수·발송</u>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소청심사위원회) ①·② (생 략)	제15조(소청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서의 <u>수발</u> ·심사 및 보존	2. ---- <u>접수·발송</u>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u>별표 3과 같으며</u>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u>별표 3과 같다.</u> 다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u>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와 같으며</u>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7장 한시정원</u>
	제21조(한시정원)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u>별표 7에</u>

	따른 한시정원을 소청심사위원회에 둔다.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77	384	+7
·	·	·	
·	·	·	
일반직 계	376	383	+7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	13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	25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8	70	+2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 주사 또는 전산주사	<u>60</u>	<u>63</u>	+3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	<u>17</u>	<u>18</u>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3	-
<u>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간호주 사보 또는 전산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78</u>	<u>384</u>	+6
·	·	·	
·	·	·	
일반직 계	<u>377</u>	<u>383</u>	+6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2</u>	<u>13</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 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 관	<u>26</u>	<u>25</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 무관	<u>68</u>	<u>75</u>	+7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 주사 또는 전산주사	<u>60</u>	<u>58</u>	-2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u>	<u>2</u>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	<u>17</u>	<u>19</u>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3	-
<u>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간호주 사보 또는 전산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u>5</u>	<u>4</u>	-1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 서기 또는 전산서기	<u>1</u>	<u><삭 제></u>	-1
운전서기	<u>1</u>	<u>2</u>	+1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u>1</u>	<u><삭 제></u>	-1

상당(비서)			
운전서기보	<u>3</u>	<u>2</u>	-1
·	·	·	
·	·	·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57</u>	<u>158</u>	+1
·	·	·	
·	·	·	
일반직 계	<u>156</u>	<u>157</u>	+1
·	·	·	
·	·	·	
전문경력관 가군(외국어훈 련 담당)	<u>1</u>	<u>2</u>	+1
·	·	·	
·	·	·	
전문경력관 가군(이러닝콘 텐츠 담당)	1	1	
전문경력관 가군(체육교육 담당)	<u><신 설></u>	<u>1</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외국어훈 련 담당)	1	<u><삭 제></u>	-1

[별표 3의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개정안
총 계	157
정무직 계	1
원장(차관급)	1
일반직 계	156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 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 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3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전산사무관	2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주사	22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시설주사	2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전산주사	3

방송통신주사	1
공업주사	1
임업주사	1
행정주사보	10
간호주사보	1
전산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2
행정서기	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2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7
공업서기보	1
임업서기보	1
시설서기보	1
방송통신서기보	2
운전서기보	4
조리서기보	1
방호서기보	10
기계운영서기	1
통신운영서기	1
농림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3
전문경력관 가군(외국어훈련 담당)	2

전문경력관 가군(국제협력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교육개발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이러닝콘텐츠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체육교육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협력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방호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구내식당조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의무실운영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교육과정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교육개발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교육평가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이러닝콘텐츠 담당)	2
전문경력관 다군(교류협력 담당)	1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5

비고: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정원 5명 중 1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법제처 소속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대체하여 보할 수 있다.

[별표 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관련)

1. 인사혁신처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	9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5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7급 1명)	2022년 3월 31일까지
4)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2명)	2022년 3월 31일까지
5)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2.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3명 (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1명)	2021년 6월 30일까지

[별표 7]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제21조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3년 3월 31일)	<u><신 설></u>		
총계		1	+1
일반직 계		1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